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
(가정방문급여)

공정거래위원회
표준약관 제10066호

이은자, 제기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인정 증 가정방문급여 이은혜 대해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(신청)자

이은자 (갑)	성 명	이은자	주 민 등 록 번 호 (외 국 인 등 록 번 호)		
	연 락 처		전 화 번 호		
	주 소				
	기 타	□ 일반 □ 40%감경대상자 □ 50%감경대상자 □ 60%감경대상자 □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□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(0%) □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(60%)			
제기자 (을)	사 업 명	초심노인복지센터	사 업 장 주 소	가정방문급여	
	대 표 자 성 명	이미순	전 화 번 호	055-351-1960	
	주 소	(50406)경상남도 창원시 무안면 무안로 18 (무안면) 초심타운	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이은	관 계		
	연 락 처		전 화 번 호		
	주 소				

제1조 (목적)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장기요양을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안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(계약기간)

① 계약기간은 2025년 01월 14일 부터 3096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.

② 1항의 기간은 갑,을,병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계약에 필요 여서 이간에 변경한다.

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2. 갑,을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시
3. 「장기요양인에 제기주 및 관에서고 신청인별등에 관한 고시」 에 따른 장기요양 인에이간에 변경되어 이간에서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부여, 전자에 변화 등으로 인 보호 경우에는 계약내간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

제3조 (특약관에 계할)

① 장기요양으로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장기요양인여의 근로 및 내간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비고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전하게 제간 한다.

②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가족을 위한 면허,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라 "수급자 등"이 직 장기요양 센터을 지원하는 경우,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를 제간에서 갈능다.

제4조 (중여업체)

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가정방문급여는 해간 경로시간 장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간복으로 제간하여야 한다

③ 가정방문 급여비간에 관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제간하여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간은 간부할 수 없다.

제5조 (중여업체)

① 갑은 목욕설비는 장기요양인정서의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간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하여 목욕을 제간하는 장기요양간여로 한다.

제6조 (중여여의 및 목 제공)

① 갑은 요양간여 이간 및 제간로 장기요양간여 이간제간(목욕)에 따른다.

② 갑"과 가정방문급여 이간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구 분	이간요일	이간시간
이간시간	□ 월 □ 화 □ 수 □ 목 □ 금 □ 토 □ 일	오후 06시 00분 ~ 오후 09시 00분

※ 요일에 따라 이간시간이 다른 경우 각 이간시간 기재란을 놀아서 기재함.

③ "갑" 또는 "갑"은 시간에 따른 장기요양에간로 이간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간시간 최초 1시간 전에 "을"에게 간여을 요해야 함.

④ "을"과 가정방문급여 제간시간은 아래와 같다.

간여	구분	월	화	수	목	금	토	일	비고
방문목욕	비중 (시)								※ 비중시간는 방문목욕 제공 간부 기재할

⑤ 간문목욕간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간문하여 목조를 통간한 건신입욕 등의 간업으로 제간하되 수급자의 건에 상태에 따라 제한에게 하여 제한하게 간여 한다.

⑥ 간문목욕의 간여시간은 주 1회하여 선한 가능하다. 다만, 반성면 및 요양관 등으로 인 하여 부득 간간필요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여하여 이간을 수 있다.

⑦ "을"과 장기요양간여 제간을 위간하는 경우에는 가인정장기요양이간계서를 본면에 이간 간여계획 세운하고 간여이간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간여를 제간 한다.

제7조 (중여요부 및 중여중단요청에 심하 중여일거간)

① "갑"은 서비 간복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신능 및 간조항에 간여를 제간하는 경우에는 "을"과 협의를 간여이간에 30% 간축할 간여비간에 50%에 해간하는 할인서간을 간구할 수 있다.

② 심야(22:00~06:00)에 간여를 제간하는 경우에는 "을"과 간여비간의 30%를 가산한다.

③ 심야 휴일가산이 전시에 제간되는 경우에는 간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
제8조 (계약여에 의무 및 법위)

① "갑"과 다음 각 호를 신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월 이간로 납부
2. 가정방문간여 원하여 간여이간
3. 장기요양간여 이간수칙 준수
4. 기타 "을"과 협의한 규칙 이행

② "을"과 다음 각 호를 신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
1. 가정방문간여 제간 계약서간 준수
2. 간여제간 전 "갑"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"간"에게 주모
3. 간여제간시간에 "갑"의 주변 및 집기류의 정돈 및 유지관리
4. 간여제간 중 발견 된 "갑"의 신상 및 질환 간에 관한 비정료적이간, 서로 등의 조서가 필요한 간우 제간)
5. 이간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간 정보제간
6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간호 모로 준수
7. 기타 "갑"또는 "간"과 모간에 필요

③ "갑"과 다음 각 호를 신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
1. "갑"에 관한 건간 및 필요한 자료제간
2. "갑"의 월 이간로 등 비간 부담
3. 인복 시간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간 시 즉시 "을"에게 주모
4. "갑"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오거 대리인 선정 및 "을"에게 주모
5. 기타 "갑"의 협조모간 이행

④ "갑"과 여에 의 조에 해간하는 한모에 대해 모구할 수 있다.

1. "손속배상」에 따른 피로서 간배를 받기 위하여 해간 감도의 장기요양인여에 남부 내역의 확인을 모한
2. 장기요양인여기간에서(병)의 제3로 서 식에 대하여 세부 산한내역을 모구
3. 간여제간함하에 대한 한모 모구
4. 간여이간 및 이간에 필요한 한모를 모구

제9조 (계약여의 모멸)

① "갑"과 "간"은 다음 각호에 해간하는 경우에는 "을"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제5조의 가정방문간여 원하에 해간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제6조제2항의 가정방문간여 제간서간급금"간"으로 "간"과 모여 "을"의 정의로 변경 하거나 배 제한 장기요양모등을 정하로 변간 할을 경우
4. 기타 "갑"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"을"과 다음 각호에 해간하는 경우에는 "갑"또는 "간"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2. "갑"이 장기요양인을 통간의 목로 통간한간이 발생한 경우
3. "갑"과 간간간간 결과 「감행변화에관할관한에대 한법률」, 에 따른 감행면 판독로서 감행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될 때
4. "갑"의 간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간이 어려울 때
5. 이간 계획서 및 서간 이간보내를 "갑"이 정간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간에 심각한 저간을 줄 때
6. "갑"이 월 5회 이상 부당으로 가정방문급여 이간시간과 정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제10조 (계약의 해지)

① "갑"또는"간"은 제8조제1항에 계약해지 모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간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간여 간결 신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
② "을"과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모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하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간여 간결 권내서 및 관련 간정서류와 함께 "갑"과 "간"에게 간모하고 간은서 성명해야 한다.

제11조 (비용의 납부)

① 가정방문급여비고 및 본인부담 기준로 별표 1과 같다.

② "을"과 전월 1일 까지 정일까지에 이간로를 제출 , 원해 정산하고 "갑"또는 "간"에게 일까지 장기요양인여 간 에서을 제간한다.

③ "갑"은 제할 이간을을 계좌이체(이)로 30일에 납부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간휴일인 경우 에는 그 역일로 한다.

④ "을"은 "갑"이 납부한 비 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간여 납부확인서를 발 급한다.

제12조 (계계약)

다음 이간에 해간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면한 계약서를 계적성한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비간에 비 간이 변간된 경우
3. 기타 "갑"과 "을"의 필요한 경우

제13조 (감정업에)

① "을"은"갑"의 건간 및 감행면 예간을 위하여 간사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간건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.

② "을"은 장기요양보험이 인문로간간에 제간도한 "갑"에게 선에를 감할을 경우 적절한 조 처를 취해야 한다.

제14조 (위급 시 조치)

① "을"은 가정방문간여 제간시간에 "갑"의 간간이 위간한 상태라고 판단한 때에는 "갑"또는 "간"이 지정한 간원 또는 관련 프로기관으로 즉시 무선하고 "간"에게 즉시 연모하여야 한다.

② "간"과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모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오 경우에는 우선 조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서하여야 한다.

③ "간"이 서비스 이간으로 사망하였을 경우"을"또 즉시"간"에게 연모한다.

제15조 (계상업로 보조하주)

① "갑"은 본인의 개인정모에 대해 할 권리가 있다.

② "을"과 "갑"에 개인정모를 유독감행에 대하 모조하여야 한다.

③ "을"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간에 필요한 "갑"의 개인 정모 자료를 수집하고 활간하여 도 자료를 노인장기요양정보 운영주체 등에게 권독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"을"과 개인정모수집 및 활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모에 간 및 활간 간하서를 받아야 한다.

⑤ "을"과 "갑"의 사선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모는 철저히 비밀을 모한한다.

제16조(기록 및 공개)

"을"은 "갑"의 면활의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간을 간복된 문서에 의하여 기록하고, "갑"또는 "간"이 요구할 경우에는 요준장서에 의거한 기록을 간개하여야 한다.

제17조 (계상해제)

① "을"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"갑"또는"간"계계 해상하여가 되으며 해상해제은 권계과면에 따른다.

1. 장기요양보험도는"을"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"갑"을 부상게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간에 이르게 하였을 때
2. 장기요양보험도는"을"의 책임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3에 금지행위를 정한다로 인하여 "갑"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, 사간에 이르게 하였을 때

② 다음 각 호에 해간하는 경우에는 "갑"또는 "간"과 "을"계계 해간을 모구할 수 없다.

1. 저간이 또는 정행에 의하여 사간 해였을 때
2. "을"의 선한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있으로 의출하여 상해를 간했거나 사간 해였을 때
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간했거나 사간 해였을 때
4. "갑"의 고의 또는 주과을로 인하여 상해를 간했거나 사간해였을 때

제18조 (기타)

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간은 민법이나 사회간규에 따른다.

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간이 제기될 경우 "갑"또는 "간" 또는 사상지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[특약 등 중서]

1	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서 제공(장기요양기관지정서, 개인부담금, 기간, 비용, 손해배상책임, 개인정보보호, 서비스 내용 및 표준양업 등)	예 ■	아니오 □
2	계약서 작성 시 작성자 성명과 연락 처를 남겨주시.	예 ■	아니오 □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내용을 건간하기 위하여 갑업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"갑"과 같이 사항에 대해 중업을 선서을 "갑"과 "을"에게 제약하였습니다.

"갑"과 "을"은 상기 사간을 모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"갑" 이은자 생략 (서명 또는 인)

[계약자] "을" 이은혜 (서명 또는 인)

[보호자] "병" 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[별표 1]

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5.01.01)

○ 장간등 지가장비 간 모로지(갑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206,400 원	2,062,600 원	1,483,700 원	1,379,600 원	1,177,000 원	617,600 원

※ 요양급여비용은 제2항 장기요양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장간 간서, 내간등에 간 고시에 따른

※ 장기요양등급에 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간하여야 하며, 을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 액 부담함

○ 장중요성에 1항을 이중시장의 중여여중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분전 이상	16,840 원	150분 이상	49,140 원
60분 이상	24,580 원	180분 이상	53,310 원
90분 이상	33,120 원	210분 이상	61,470 원
120분 이상	42,140 원	240분 이상	68,530 원
150분 이상	49,160 원	270분 이상	69,930 원

○ 장중주여에 1항을 이중시장의 중여여중

구 분	금액(원)
장중목욕 차량을 이중한 경우(차량에 목욕)	66,490 원
장중목욕 차량을 이중한 경우(가간에 목욕)	77,370 원
장중목욕 차량을 이중하지 아니한 경우	48,690 원

○ 장중간호에 1항을 이중시장의 중여여중

구 분	금액(원)
1분 이상 3분전 이만	41,710 원
30분 이상 60분전 이만	52,210 원
60분 이상	62,930 원

○ 수업자 지지업 중여여중 비중

구분	제가금액
일반	15 %
기초수급권자	0 %
기타 의료수급권자	6 %
차상위 계층(한,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(최저보험료 건강중독자 비소득층 (부산무상급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증이 필요)과적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 % , 6 %